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19일, 허영의원 등 13인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2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2.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2.1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3차 국방위원회(2025.2.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영의원)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방·제지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경찰과 유사하게 직무수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관 및 소방관의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하여 국가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소송 지원이나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위축되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개인의 차원이 아닌 소속 기관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국가가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과 군사경찰이 업무수행시 소송비용에 따른 경제적인

사유로부터 자유로워짐에 따라 범죄의 예방·제지와 관련된 직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여짐.

또한 유사입법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도 직무수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정안의 규정은 필요해 보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4(소송 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 6(소송지원)

- 다만, 개정안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모든 책임에 대해 소송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초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군사경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검토 필요
- 한편, 개정안은 소송 수행 등의 지원 주체로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5조제2항~제4항에서 규정된 군사경찰 직무의 지휘·감독 체계를 고려하여 지원 주체에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군사경찰부대의 지휘관)도 포함시키는 것 검토 필요
- 군사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군사경찰로 하여금 적시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거나 제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형의 감면이

제한적인 조건 하(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등)에서만 인정되어 공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군인의 군사작전 수행이나 재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형사책임을 감면하고 있는바, 형평성 차원에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규정 필요

- 한편, 유사 직종인 경찰관 및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의 감면 규정이 있는 점도 참고 필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소방기본법」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참고자료 참조)

- 다만, 개정안은 형사책임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죄에 군사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위원회(소위원회) 심사내용

형사책임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기타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부호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

- [붙임] 1.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20.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형사책임의 감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로 한정하려는 것임.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의2 중 “참모총장”을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3 중 “범죄행위가”를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17조의2(소송지원)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 른 직무의 수행으 로 인하여 민·형 사상 책임과 관련 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7조의2(소송지원) ----- ----참모총장 또 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 대의 장(이하 “국 방부장관등”이라 한다)----- ----- ----- ----- ----- ----- .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에 기인한 경우, 국 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 비용 등에 대한 구 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의3(직무수행)	제17조의3(직무수행)

	로 인한 형의 감면)	로 인한 형의 감면)
	<u>군사지역에서 범죄</u>	----- <u>다음</u>
	<u>행위가 목전에 행</u>	<u>각 호의 범죄행위</u>
	<u>하여지려고 하거나</u>	<u>가</u> -----
	<u>행하여지고 있어</u>	-----
	<u>타인의 생명·신체</u>	-----
	<u>에 대한 위해 발생</u>	-----
	<u>의 우려가 명백하</u>	-----
	<u>고 긴급한 상황에</u>	-----
	<u>서, 군사경찰이 그</u>	-----
	<u>위해를 예방하거나</u>	-----
	<u>진압하기 위한 행</u>	-----
	<u>위 또는 범인의 검</u>	-----
	<u>거 과정에서 군사</u>	-----
	<u>경찰을 향한 직접</u>	-----
	<u>적인 유형력 행사</u>	-----
	<u>에 대응하는 행위</u>	-----
	<u>를 하여 그로 인하</u>	-----
	<u>여 타인에게 피해</u>	-----
	<u>가 발생한 경우, 그</u>	-----
	<u>군사경찰의 직무수</u>	-----
	<u>행이 불가피한 것</u>	-----
	<u>이고 필요한 최소</u>	-----
	<u>한의 범위에서 이</u>	-----
	<u>루어졌으며 해당</u>	-----
	<u>군사경찰에게 고의</u>	-----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 -----

-----.
1. 「형법」 제2편 제
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
장 강간과 추행
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
장 절도와 강도
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
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
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가정폭력범
죄, 「아동학대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동학대범

		<u>3</u>
--	--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의2(소송 지원)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군사경찰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군사경찰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해당 군사경찰에게 소송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17조의3(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군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군사경찰</u>

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
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군사경찰을 향
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
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
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
우, 그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
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군사경찰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
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하는 범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정
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